

서울특별시의회
제296회 임시회 제2차
행정자치위원회

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
조례 전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

2020. 9. 3.

서울특별시의회
신원철 의원(더불어민주당, 서대문1)

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신 원 철 의원입니다.
- 마을공동체 정책, 협치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시민과 시민사회가 서울시 정책에 참여하고 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이 양적·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 시민사회의 안정적인 자립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시민과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에 대한 인정범위와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정부 역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「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」을 제정해 시민의 공익활동에 대한 ‘시·도 계획 수립’, ‘시·도 시민사회 발전위원회의 설치’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
- 이러한 정책적인 환경 변화에 맞도록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기존에 규정돼 있지 않았던 권역별 NPO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 시민사회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